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6.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조치생략 ^{주1)} 과태료 5억 4,350만원 부과
임원	주의(조치생략 ^{주2)} 1명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1명 업무정지 30일 : 5명 과태료 120만원 ~ 1,240만원 부과 : 79명

주1) '26.2.4. 기관에 대한 조치와 경합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주2) '26.2.4. 임원에 대한 조치와 경합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83명은 2021. 4. 1. ~ 2024. 3. 26. 기간 중 ㉠보험 등 616건의 보험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9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2호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3. 3. 10. ~ 2024. 3. 22. 기간 중 ㉡보험 등 총 15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丙 등 139명에게 총 6.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제4호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